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
제 3337호

2016. 3. 3. (목)

함께
서울

서울특별시


4-7.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

 2015년에 우리 서울특별시가 예산편성기준 부적정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.
(단위 : 백만원)

감액 사유	위반지출	지방교부세 감액금액
합 계		5,219
예산편성 기준위반	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	5,219

▶ 법적 근거 : 『지방교부세법』 제11조(부당교부세의 시정 등) 및 『지방재정법』 제38조 (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)

4-8.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

 2015년에 우리 서울특별시가 재정혁신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.
(단위 : 백만원)

증액 사유	평가분야와 성적	지방교부세 증액금액
합 계		400
재정 혁신	지방 재정혁신 우수사례(벤치마킹분야)	300
공기업 혁신	공기업 혁신(상하수도 분야)	100

▶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-458호

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취소 공고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면허를 받은자는 그 사업의 전부를 휴업·폐업을 하여야 하나 미신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, 제85조제1항제16호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특수여객운송사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
2016년 3월 3일
서울특별시장

1. 처분대상 : 별첨 1
2. 처 분 명 : 특수여객운송사업 등록취소
3. 처 분 일 : 2016. 2. 26.
4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: 신고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의 휴업·폐업
5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특수여객운송사업 등록취소
6. 처분근거 :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6조, 제85조제1항제16호
7. 기타사항
 - 등록취소된 업체의 임원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신규등록시 향후 2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됨.
 - 등록취소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
[별첨 1]

특수여객운송사업 등록취소 업체

연번	상호	대표자	주사무소	비고
1	㈜친절모터스	유경상	관악구 신림동 105-91 101호	
2	재건특수	유소영	관악구 신림8동 572-5 5층2호	
3	미림장의사토탈서비스	오수용	관악구 신림8동 560-3	
4	한국묘지이장공사	강대천	중랑구 상봉1동 100-17 상봉빌딩 611호	
5	다정특수운송사	이재기	강동구 길2동 136-4	
6	참사랑 서비스	김인순	은평구 구파발동 92-1	
7	㈜대원리무진	김용선	마포구 서교동355-4(유남빌딩3층)	
8	㈜노블리더스클럽	박명자	마포구 신공덕동 12-1(근영빌딩 2층)	
9	㈜하늘소풍	홍정선	서교동 378-16강화빌딩 1층	
10	㈜홍익상조	임희경	영등포구 여의도동 13-21	
11	연흥특수여객	이성수	영등포구 여의도동 7가 94-249	
12	전국통합장례법인㈜	조태형	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107	
13	㈜에일의전라이프	박문수	종로구교남동47	
14	새롬세상㈜	조성만	중구 남대문로4가 17-4	
15	한독특수여객	장 진	동작구 신대방동 586-13	
16	㈜미소모터스	조미선	강동구 명일동 312-95 상일빌딩 203호	